

청 구 원 인

가. 증여무효의 소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 ‘
(이하 위 아파트)는

- a) 위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 동 소재지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조합원
망 송영(이하 고인)의 ‘토지 지분’ 부동산을,
2014.1.10. 증여계약서(갑1호증)로 피고들이 2분의 1로 나눠 증여받은 후,
b) 2014.1.16. 피고들이 작성한 고인 은행전표 3매(갑2호증)에서 갑2-2호 및
갑2-3호로 고인 예금 138,677,366원을 인출하여, 갑2-1호에 기재된 고인
명의 건설사 가상계좌로 138,677,366원을 입금 즉, 2014.1.15부터 2016.
5.16까지 7회로 나눠서 건설사에 분할 납부할 분양대금 전액을 피고들이
고인 예금을 인출하여 건설사에 미리 납부 하였습니다.
c) 그리고, 2016년 완공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3호증)와 같이, 피고들이
2016.12.9. 각 2분의 1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밝힙니다’만, ‘갑1호증 토지 지분의 증여와 건설사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갑2호증 고인 예금의 증여’가 ‘증여 무효’입니다.

그러하기에, 「‘피고들이 권원 없이 자신들의 소유로 한 ‘갑1호증의 토지 지분
과 갑2호증의 고인 예금’」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한편, 갑1호증과 갑2호증의 반환 대상이 위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원고는 ‘갑1호증과 갑2호증 반환 대상’의 반환 청구가 아니고,
피고들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아래 1) 과 같이 산출된
7분의 3의 비율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의 반환 청구를 합니다.

1) 원고가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7분의 3 지분'의 근거입니다.

①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갑4호증)를 보면, 배우자 (이하 모친) 및 원고와 피고 송 , 다른 자녀 송 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사망진단서(갑5호증)와 같이 2021.8.2 사망하였습니다.

② 「뒤의 '2. 상속회복 청구의 소' 청구원인 부분 [입증] 1)」과 같이, 피고들이 은행 지점 부장 서 로 하여금 2014.6.22. 고인 사후 열린 2014.6.29. 유족회의에 '고인에게서 직접 받았다'면서 유족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2014.2.15. 고인 유언장(갑6호증)'이 있습니다.

ㄱ. 고인이 2014.6.22.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징후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6호증 유언장을 살펴보면,

a) 2014.12.23. 고인 상속세 신고서(갑7호증) 3면과 같이

고인의 남은 재산은 '은행 예금 5,064,869원', '종신형 연금보험 5건 820,226,630원'과 '고인의 집이 재건축 중이기에 일시 전세로 거중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20,000,000원'의 '너무나 단순한 구조'입니다.

b) 그런데, 갑6호증 유언장은 「'어느 은행 예금인지 구분'이 없고, '보험 모두'라고 하여서 '보험 5건의 구분'도 없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c) 결정적으로, 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아예 없습니다.

d) 또한, '맨 마지막 줄이 '유언장 송영 宋煥'으로 기재되고 나서 '고인 도장'의 찍혔는데, '宋煥은 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2024.3.8. 감정서(갑8호증)의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6호증 유언장의 '고인 도장의 날인'은 유언장 글을 쓴 사람이 고인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ㄴ. 앞의 'ㄱ'의 사실들로 판단할 때,

- a) 「갑6호증 유언장 작성일 2014.2.15. '이유는 모르겠으나, 고인은 일시적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 b) 또한, 갑6호증 유언장은 「'피고들이 부르는 대로 고인이 받아 쓰고, 피고들이 '宋煥' 고인 서명을 위조하고, 고인 도장을 찍은 것」이 되기에, 「갑6호증 고인 유언장은 '위조된 유언장'이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 c) 그리고, '피고들 중 누구인가 한 명이 위조'하였겠지만 '부부 관계로 고인의 증여를 함께 받은 피고 송 와 강 모두 '위조를 한 자'입니다.
- d) 송 는 '고인 유언장의 위조'로 고인 상속재산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ㄷ. 고인의 배우자 모친 및 두 자녀 원고와 송 의 상속지분 입니다.

- a) 모친은 3.5분의 1.5 즉, 7분의 3 지분을 갖고 원고와 송 은 각 3.5분의 1 즉, 각 7분의 2 지분을 갖습니다.
- b) 그런데, 모친이 2021.8.2. 사망하였기에, 모친의 7분의 3 지분은 원고와 피고 송 그리고 송 이 각 7분의 1 지분을 갖습니다.
- c) 원고는 위 7분의 2와 7분의 1을 합한, 7분의 3 지분이 있습니다.

2) 원고가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및 반환 받을 대상입니다.

ㄱ. 2014.4.30. 피고들 증여세 신고 납부서(갑9호증) 3면 '계산 내역'을 보면,

- a) 피고들이 각 663,149,371원의 총 1,326,298,742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 b)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663,149,371원의 7분의 3에 해당하는 각 284,206,873원의 총 568,413,746원의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ㄴ. 한편, 증여 무효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a) 갑1호증의 증여과 갑2호증의 증여로 피고들이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위 아파트에 대하여,

b) 원고는, '갑1호증과 갑2호증의 증여 무효'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공유한 피고들 각 2분의 1 지분의 '각 7분의 3'의 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반환'을 청구 합니다.

c) 그리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반환의 효과는,

피고들이 위 아파트 최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위 아파트 소유권 행사를 한 2016년 모월 모일(일자 불명)로 소급되어야 합니다.

(주1) 피고들은 '지금까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1] 피고들의 사기죄

(1) '갑1호증 2014.1.10. 증여계약서 및 갑2호증 은행 은행전표들'에 의한 고인의 증여는, 사실은 피고들이 고인 재산을 **편취한 것**'의 입증입니다.

① '고인이 증여했다'는 **고인의 의사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ㄱ. 갑1호증은 모든 내용이 인쇄된 계약서에,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날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ㄴ. 그런데, '**고인의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날인'만 되었을 뿐, 계약서가 전부 인쇄되었기에 '고인이 증여했다'는 고인 증여 의사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명 계약 조건'이기도 한 '고인 서명'.**」이 없습니다.

ㄷ. 2014.1.10. 고인 도장만 찍힌 갑1호증부터 2014.2.15. 고인이 도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갑6호증 고인 유언장 사이의 기간에 작성된 '고인의 은행전표들에서 고인 도장의 날인'이 고인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a) 2014.1.16. 갑2-2호 58,650,466원 은행전표는 갑8호증 감정서에서 「'금액과 서명'이 고인의 필체가 아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2-1호, 갑2-3호도 동일 필체인 바, 모두 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b) 2014.2.7. 고인 은행전표(갑10호증)는 '고인이 피고 강에게 갑1호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추가 증여했다'면서 '128,356,610원의 고인 예금이 인출된 은행전표'입니다.

그런데, 갑10호증도 갑8호증 감정서에서 「'금액과 서명'이 고인의 필체가 아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c) 2014.2.7. 직전 2014.2.3. 2,183,180원이 현금 인출된 은행전표(갑11호증)와 26,000,000원이 고인 계좌로 이체된 후 위 b)의 2014.2.7. 갑10호증의 고인 예금 인출에 사용된 은행전표(갑12호증)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고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d) 이처럼, 2014.1.10.부터 2014.2.15. 사이 고인 예금을 인출한 은행전표들이, 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즉 고인이 고인 도장을 찍지 않은 것입니다.

e) 이로써, '2014.1.10. 갑1호증 증여계약서와 2014.1.16. 갑2호증 은행전표에 의한 '고인의 증여'는,

'피고들이 고인 도장을 찍어서 고인의 증여를 가장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들이 고인 재산을 편취한 것'입니다.

ㄹ. '피고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갑1호증의 토지 지분 증여'와 '갑2호증의 고인 예금 증여'는 '증여 무효'입니다.

[입증-2] 추가 입증입니다.

(1) 「고인이 '남은 여생을 지내야 할 유일한 집(재건축으로 일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을 없애 버리고 '무주택자'로 전략하는 '갑1호증의 증여'는 있을 수 없다」를 입증 합니다.

① 원고는 고인 사후 2015.8.6. 고인의 배우자 (이하 모친)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청구(사건번호 2015느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7.8.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친은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였기에, 고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모친'을 자녀들이 잘 모실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ㄱ. 「피고들은 모친을 못 모신다. 모친은 원고와 송 이 모실 것이다」는 사실을 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인 사후, 원고와 송 이 모친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모친이 여생을 보내야 할 '한 채 밖에 없는 주택'을 모친을 모실 원고와 송 모르게 모친을 모시지 않을 피고들에게 비밀 증여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ㄴ, 더욱이, 갑6호증 고인 유언장에서 '남은 재산을 모두 모친에게 준다'고 유언하였기에, 원고와 송 은 고인에게서 1원도 상속 받지 못 하게 되어, '개천에서 주워와 키운 남의 자식' 취급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송 이 이러한 홀대에 화가 나서, 만의 하나 '모친 부양을 거부했다'면, 홀로 살 수 없는 모친임에도 모친은 홀로 전세 집을 떠돌면서 여생을 마쳐야 했을 것 입니다. 역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ㄷ. 원고와 송 이 모친을 번갈아 모셨습니다.

a) 모친과 원고 및 송 의 주민등록초본(갑13호증)을 보면,
고인 사후 모친은, 2014.12.8. 원고 주소지로 전입, 2015.6.29. 송 주소지로 전입, 2018.4.12. 원고 주소지로 전입한 뒤, 2021.8.2. 원고가 모신 가운데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ㄹ. 피고들은 모친을 모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실 의사도 없었습니다.

a) 피고 송 가 ' 가정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보내 온 서류(갑14호증) 1면과 2면을 보면,
'송 는 교수 사택에서 혼자 살고, 강 은 미국에 산다. 모친은 성년 후견인 도움을 받아 모친 돈으로 송 가 사는 교수 사택 근처의 전세 아파트를 구한다. 그리고, 모친은 도우미와 함께 산다'고 적혀 있습니다.

b) 다 핑계입니다.

도우미가 있으면, 혼자 살던 송 는 취사, 세탁 등에서 편해집니다.
모친 성년후견인에게서 모친 부양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을 모실 생각이 없다'는 '모친 부양 거부' 입니다.

'소결어'

이처럼, 피고들은 모친 부양을 거부하였고, 원고와 송 이 모친을 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재건축 중인 유일한 주택'이 모친을 모시지 않을 피고들에게
증여된 탓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게 된 모친은 원고와 송 이 모실 때
마다 원고와 송 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인이 '고인 사후, 홀로 살 수 없는 모친이 자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갑1호증과 갑2호증의 증여는

'피고들이 고인 도장을 마음대로 찍으면서 고인의 증여를 가장하여, 고인 재산
을 편취한 것'에 불과 합니다.

(2) 「피고들은 '고인의 재산' 뿐 아니라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을 정도로
의사 결정에 문제가 많던 '모친의 재산'까지 노렸다」도 밝힙니다.

2014.1.10.부터 몇 달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 입니다.

① 고인의 재산을 살핍니다.

ㄱ. 고인은 2014.1.10. 갑1호증 증여계약서 증여로 '무주택자'가 되었으며,
'피고들이 고인 도장을 찍은 갑2호증과 갑10호증의 고인 은행 전표로
2014.1.16. 138,677,366원과 2014.2.7. 128,356,610원을 인출하여 자신
들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고인 사망 시, 고인은 '예금이 5백여만원에 불과한 빈털터리' 였습니다.

ㄴ. 그리고, 뒤의 '2. 상속회복청구의 소' 에서 밝힙니다만,

고인 사망 직후, 피고들은 '미처 손을 대지 못 한 고인 보험 5건'에서
'피보험자가 송 의 2억원과 2억4천만원의 보험 2건'을 송 가 가져
갈 수 있도록 '다른 상속인들을 직접 속이는 기망행위'까지 하였습니다.

② 모친의 재산을 살핍니다.

ㄱ. 피고 송 는 치매인 모친 상태를 이용하여 2014.3.4. 모친의 10년만기 1억원 보험증서 3건(갑15호증)의 '사망시 수익자'를 '송 '로 변경하였습니다.

a) 송 는 고인 사후 2014.6.29. 자신이 적은 쪽지메모(갑16호증)에서 「'모친이 전화를 못 받아 모친 사망시 수익자를 송 로 하라' 및 '모친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세 자녀가 나눠 가지라'고 고인이 지시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b) 모친이 살아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의 '사망시 수익자'를 찾아서 전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c) 갑16호증 쪽지메모에 '세 자녀가 나눠 갖는다'고 적혀 있는데, 피보험자 모친이 보험 기간 내 사망하면, 위 보험 3건 3억원은 '사망시 수익자'인 송 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모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다29463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d) '갑16호증 보험 3건은 2016년과 2017년 만기가 되는 보험들 입니다. 혹시, 그 전(불과 2년 3년 뒤 입니다)에 모친이 죽게 된다면('모친의 빠른 죽음을 기대한 것' 입니다, 너무 황당 합니다.)

'위 3건의 보험 3억원을 모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시켜, 송 가 모두 갖겠다'는 '피고들의 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장난' 입니다.

ㄴ. 피고들은 고인 사망 이틀 전 2014.6.20. 거래가 없던 은행 지점에 모친 명의 저축예금 통장(갑17호증)을 신규 개설하고, 모친의 온갖 예금을 다 몰아 넣어서 총 231,508,972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a) 피고들은 '모친 예금의 관리가 힘들다. 한 곳으로 모아 정기에금으로 관리 하라'는 고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b) 정기에금을 하겠다면, 2014.6.20. 정기에금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으려면, 기존 모친 통장에 모으면 되지, 거래도 없던 해당역지점에 통장을 신규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c) 더욱이, 2014.6.20. 모친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은행전표들(갑18호증)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전표가 '모친 대신 고인이 작성했으나, 계좌번호는 피고들이 작성한 은행전표'이며, 피고들이 작성한 은행전표도 있습니다.

갑18-1호 '고인 예금'의 '고인 작성'에 '계좌번호' 피고들 작성 은행전표
갑18-2호/5호/6호 3매는 '모친 예금'의 '고인 작성'에, '계좌번호' 피고들 작성 은행전표

갑18-4호 '금액, 서명, 계좌번호' 모두 피고들이 작성한 모친 은행전표

갑18-3호는 '고인이 금액을 계좌번호 쪽까지 적어서, 계좌번호를 피고들이 추가로 기재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은행전표'입니다.

(주2) 은행 창구에서 은행전표의 금액과 서명'은 고객이 반드시 적게 하지만

통장이 제시되기에 '계좌번호'가 안 적힌 경우 그대로 놔 둡니다.

그런데, '예금 명의자 모친이 안 와서 이상하다'고 느낀 은행 직원이 일부러 '계좌번호'를 은행에 온 피고들에게 적게 한 것입니다.

2014.6.20. 오후 '고인 예금'을 '다른 모친 계좌'로 옮긴 별도 갑18-7호의 '계좌번호가 공란인 이유'가 '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18-7호마저 우측의 '돈을 보낼 모친 계좌'가 '피고들이 적은 은행전표'입니다.

d) 이틀 뒤 2014.6.22. 고인이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모친의 증여를 가장'하여 '위의 모친 돈 2억여원을 편취할 장난을 칠 준비'를 미처 못 하여서, 위의 모친 돈이 그대로 남은 것 입니다.

역시 '피고들의 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장난 입니다.

나. 상속회복청구의 소

원고는 '송 가 고인 사후 상속을 받을 수 없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부당 상속받은 고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을 청구 합니다.

1) 송 가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상속받은 고인 상속재산' 입니다.

① 송 가 상속 받을 수 없는 근거 입니다.

(주3) 송 가 '갑6호증 고인 유언장 위조로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 하면, 아래와 같이 따로 계산하면서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ㄱ. 갑7호증 2014.12.23. 고인 상속세 신고서 3면 '2. 상속재산내역'에서 고인 상속재산은 2,599,946,858원 입니다.

ㄴ. 상속지분은 총 4.5 (배우자 1.5, 세 자녀 각 1)에서 모친 1.5 세 자녀가 각각 1 입니다.

따라서, 송 는 위 2,599,946,858원의 4.5분의 1인 577,765,968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그런데, 갑13호증 3면 '송 에게 증여한 재산 '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송 대신 강 에게 증여한 재산(송 가 주장하였습니다)'을 합한 1,326,298,742원이 있습니다. 위 'ㄴ.' 577,765,968원과 비교하면 송 는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 이상을 이미 증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송 는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속회복의 대상 입니다.

ㄱ. 앞 ①과 같이, 송 는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뒤에서 밝힙니다’만, 송 는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2015.2.10. ‘고인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송 의 2억원과 2억4천만원의 보험(이하 위 보험) 2건을 송 가 갖는 합의’를 하고, 2015.2.10. 보험회사에서 명의 변경 까지 마쳤습니다. 이처럼, 송 는 위 보험 2건을 상속받았습니다.

ㄴ. ‘뒤에서 밝힙니다’만, 원고는 ‘송 가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아서 더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2022년 2월경 처음 알았습니다.

2) 원고의 상속회복 지분과 상속회복 방법 입니다.

① 원고의 상속회복 지분 입니다.

a) 송 는 ‘갑6호증 고인 유언장 위조’로 상속권이 없기에, 배우자 모친과 두 자녀 원고와 송 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b) 역시 ‘뒤에서 밝힙니다’만, 2015.2.10. 상속인 모두가 ‘모친은 전세보증금 320,000,000원을 갖는다. 보험은 자녀들이 갖는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c) 따라서, 위 보험 2건은 원고와 송 에게 각 2분의 1 지분이 있는 만큼, 원고는 송 가 부당하게 상속 받은 위 보험 2건에 대하여 2분의 1의 상속회복 지분이 있습니다.

② 원고의 상속회복 방법 입니다.

ㄱ. 원고는 위 보험 2건을 피고 송 와 ‘각 2분의 1’로 준공유 합니다.

ㄴ. 상속 회복의 시점은 고인 사망일 2014.6.22.로 소급합니다.

[입증] ‘뒤에서 밝힙니다’고 한 ‘입증’입니다.

(1) 피고들은 은행 직원 서 와 공모하여, ‘고인이 고인 보험들을 피보험자 기준하여 자녀들이 가지라고 했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사기죄입니다.

① 피고들이 2014.6.29. 유족회의에 ‘고인 유언을 갖고 올 금융직원이 있다. 증인이 되어 달라’면서 친척들 10명을 오게 했고, 은행 지점 부장 직급의 팀장 서 라는 자(이하 서)를 오게 하였습니다.

ㄱ. 서 는 2014.6.29. 나타나자마자 ‘고인이 서 에게 쓰게 한 글(이하 서 글)이 있다’면서 낭독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족들이 ‘지금 읽은 글을 달라’고 하자, 「고인이 서 가 갖고 없애라 했다」는 ‘왜 낭독해서 공개했는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이유’로 ‘서 글’의 전달을 거부 하고, 갑6호증 유언장을 전달 하였습니다.

(주4) 위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이 2014.6.29. 녹취록(갑19호증)에 있습니다.

a) 갑19호증 녹취록 10면, 고인이 ‘보험 모두를 모친에게 준다고 한 유언장을 변경한다. 자녀들이 보험을 나눠 가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b) 12면, ‘서 글’ 전달을 거부하면서, ‘교수님(고인)이 주셨다’면서 전달

c) 13면, 송 가 ‘진짜 고인 글씨로 쓴 거’라고 하고 친척 송 이 읽은 것이 ‘(위조로 확인 된) 갑6호증 고인 유언장’입니다.

d) 피고들과 공모한 서 가 「‘모친에게 모두 준 유언장을 변경하니 자녀들이 나눠 가져라’고 조작한 ‘서 글’」을 공개하고 나서, ‘모친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위조된 갑6호증 고인 유언장을 전달함으로써, 막대한 금액의 사전 증여를 받은 피고 송 와 달리 원고와 송 은 고인에게서 1원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조작한 것 입니다.

e) 그리고, 송 가 「법적 효력있는 갑6호증 유언장을 무시하고 세 자녀가 고인 보험을 나눠 갖자」고 원고와 송 을 유혹한 것 입니다.

ㄴ. 이처럼, 피고들은 '사전 증여받았다면서 갑1호증과 갑2호증으로 고인 재산을 편취'한 데 그치지 않고, '서 와 공모하여 위 보험 2건을 편취할 목적의 기망행위를 한 것' 입니다. 즉 '추가 사기죄'를 범한 것 입니다.

② 이후에 계속된 송 와 서 가 공모한 사기죄의 기망 행위 입니다.

ㄱ. 2014.7.5. 2차 유족회의 녹취록(갑20호증) 2면,

a) 갑6호증 유언장을 진짜로 믿은 원고는 '우리는 받을 것 없다'고 합니다.

b) 반면, 갑6호증 유언장을 서 에게 제시하도록 한 송 는 '고인 보험, 그것이 (자녀들이 받을) 상속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송 는 「갑6호증 고인 유언장」을 '법적 효력 있는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 입니다.

송	」: 우리가 상속 받을 게 뭐 있어?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송	: 보험증.
송	: 있어.
송	: 보험증, 그게 상속이야.
송	: 그것은,
송	: 그거 얼마 거 아냐?

ㄴ. 송 가 자신이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만나자고 하여, 2014.7.9. 만났습니다. 2014.7.9. 모임에서 합의한 사항을 송 이 정리하여 모두에게 2014.7.11. 송 이메일(갑21호증)이 있습니다.

갑24호증을 보면, '2014.7.9. 합의 사항'에서 '3. 아버님 유언장대로 모든 상속은 어머님으로 한다'는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ㄷ. 그 후, 송 가 '고인 포함 모두의 금융자료를 받자'면서 2014.7.24. 서 가 있는 은행 지점에서 모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7.24. 송 는 2014.7.9. '고인 유언장대로 모친이 보험을 갖는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서 와 공모하여 '보험을 우리가 나눠 갖자'고 원고와 송 을 유혹하였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갑23호증)을 살핍니다.

- a) 5면, 송 가 '교보생명 보험을 똑같은 절차(명의변경)를 밟는다, 오늘 까지. (서 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냐다'고 말을 꺼내고,
- b) 6면, 송 가 서 에게 '보험을 지금 처리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서 에게 넘기자, 서 가 '고인이 사망 하였으니, 고인에서 상속인들 세 자녀로 주인을 바꾼다'고 합니다.
- c) 7면, 원고의 남편 이병직이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아니다'고 하자. 서 가 '고인이 자신한테 고인 보험을 피보험자 지정한 사람들(원고, 피고 송 , 송 입니다),로 바꾸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 d) 원고의 남편 이병직이 '지금 명의를 안 바꾸면 문제가 되냐'고 묻자, 서 가 '월세 나오듯 연금이 나온다. 이제 받아야죠'라고 유혹합니다.
- e) 송 이 '아직 모친이 받을지 자녀들이 받을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서 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ㄹ. 이처럼, 서 를 시켜서 유족들에게 갑6호증 유언장을 공개한 피고들은 '갑6호증을 무시하자'는 용도로 갑6호증을 사용하였고, 그 유언장으로 1원도 못 받게 된 원고는 오히려 '갑6호증 고인 유언장의 고인 뜻에 따르자'는 의견이었던 것 입니다. 반면, 피고 송 는 '갑6호증 유언장을 무시하고, 피보험자인 자녀 기준으로 고인 보험을 각자 나눠 갖자'고 유혹 하였던 것 입니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22년 초 입니다.

① 원고는 '고인이 살았을 때 증여한 재산은, 고인이 죽은 후에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관계 없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법규를 몰랐기 때문 입니다.

② 원고가 모친을 모신 가운데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원고 부부의 돈으로 모친을 모셨습니다. (상황이 복잡 합니다)

a) 원고의 2021.12.23. 가정법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2021느합) 소장의 '재산목록' 별지(갑23호증)에는 '사전 증여'가 없습니다.

b) 그런데, 2022년 2월 원고의 남편 이병직이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방법'을 알아 왔고, '송 가 고인 보험을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더 상속받을 목적으로 피고들이 서 와 공모한 것이다'는 '공모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c) 그리고, 원고는 2022.2.22. '변경청구서' '재산목록' 별지(갑24호증)에 '사전증여 재산'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3) 2015.2.10. 송 가 다른 상속인들을 속이고 유혹 하는데 성공하여, '피보험자가 송 로 된 2억원과 2억4천만원의 위 보험 2건'을 송 명의로 보험회사에서 명의 변경함으로써, 송 가 가졌습니다.

① 2014.10.15. 이메일 첨부 '합의사항'(갑25호증) 2면, 피고 강 과 원고 부부가 「갑1호증 증여계약으로 고인에게서 증여받는데 이의가 없기로 하고, '송 가 원고와 송 에게 각 2억7천5백만원 총 5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 ② 2015.2.10. '갑25호증 합의사항의 송 가 원고와 송 에게 27,500만원
씩 증여'와 '고인이 남긴 보험 5건을 피보험자 기준으로 원고와 송
그리고 송 이 상속 받고 보험회사에서 명의 변경'의 최종 합의를 위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25호증 합의사항의 '원고와 송 이 27,500만원씩을 받으면
원고와 송 이 4,170만원씩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 ③ '절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ㄱ. 「보험 모두를 원고와 송 이 전부 상속받는 상속재산분할합의(갑26호증)
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와 송 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송
인 위 보험 2건(총 4억4천만원)'을 송 에게 즉시 넘기고, 4억4천만원을
2016년에 후불로 받는 매매계약(갑27호증)도 함께 하였습니다.

원고와 송 은 송 에게 위 보험 2건(4억4천만원)을 똑같은 금액에
팔았기에, 매매 차익이 없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ㄴ. 총 4억4천만원을 받아서, 갑28호증의 '송 가 5억5천만원 증여 합의'
에서 부족하게 된 1억1천만원은,
'송 가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송 에게 1억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갑28호증)도 함께 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여세는 송 이 받는 1억원에 대하여 873만원만 발생합니다.
즉, 앞 ②의 각 4,170만원의 총 8,340만원 증여세 대비하여 7,467만원의
'절세'가 되었습니다.

ㄷ. 이처럼, '절세를 위하여, 통정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허위의 합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 는 즉시 보험회사에 가서 위 보험 2건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송 로 하여 위 보험 2건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 는 위 보험 2건을 상속받았습니다.

(4) 원고는 위 보험 2건에 대하여 2분의 1 지분의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갑26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갑27호증 매매계약서가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의 합의'인 것은 맞습니다.

ㄱ. 그렇지만, 갑26호증 5항의 전세보증금 320,000,000원과 6항의 고인 예금(5,064,869원 입니다)은 모친이 갖는다'는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보험은 자녀들이 갖는다'는 갑26호증과 갑27호증 합의도 세 자녀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을 가지면서, 충실히 이행되었습니다.

ㄴ. 따라서, 피고 송 가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2015.2.10. 갑26호증과 갑27호증 합의로 자신의 소유로 한 2억원과 2억4천만원의 위 보험 2건'에 대하여,

a) 갑26호증 합의에서 모친은 전세보증금과 고인 예금을 갖고, 고인 보험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b) 따라서, '갑6호증 고인 유언장 위조'로 상속권을 박탈당한 송 를 제외하고, 원고와 송 이 '각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됩니다.